



감염확대를 줄이기 위한 휴업 요청에 협력한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안내

홋카이도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 ① 휴업 등 요청에 협조해 줄 것
- ② 좌석 간 거리를 두는 등 감염 위험을 줄이는 자주적 협력을 행할 것

이상 두가지에 협조한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마련을 도의회에 제안하기로 하고, 그 내용과 수급기간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항에 협조해야 합니다.

협조 요청 기간

- **늦어도 4월 25일 (토) ~ 5월 6일 (수) 까지**

※감염 상황에 따라 휴업 등의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 때에도 연장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휴업 등 요청 대상시설 범위

- 카바레,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시설 및 체육관 등의 운동·레저시설, 극장, 박물관 등의 집회·전시시설, 생활필수품 등 소매점 이외의 점포, 생활필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점포 등의 상업시설, 대학, 입시학원 등 학습시설
- 자세한 사항은 홋카이도 <휴업요청 등에 대해> 홈페이지에 게재된 <시설 사용정지대상시설 일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URL <http://www2.hiecc.or.jp/soudan/emg/index.html?lang=kr>

협조 요청 내용·지원액

- ① 휴업요청을 받아들여 휴업할 것
 - 법인 30만엔
 - 법인사업자 20만엔
- ② 상기에서 제외된 주류를 제공하는 음식점은 주류 제공시간을 단축(19시 까지)하는 경우 10만엔 (개인 법인 불문)

○주①, ②에 공통하는 보충사항

- 법인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됩니다.
(휴업요청 대상이 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포함됩니다.)
- 타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법인 중 홋카이도 내에 있는 대상시설은 지급대상입니다.
- 한 사람의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업장마다 휴업요청이나 주류 제공 단축요청을 받아들여야만 지급대상이 됩니다.

- ③감염위험을 줄이는 자주적인 협력을 행할 것

신청기간

본지원금은 홋카이도 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 협조요청 기간에 휴업하(하고 있었)거나, 주류 제공시간을 단축하(하고 있)는 등을 알 수 있는 가게 전단지나 매뉴얼, 안내사항이 부착된 시설 사진, 자사 홈페이지 복사본 등이 증명자료로 필요하므로, 휴업하는 동안 잘 보존·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계속

지원금수령 신청에 필요한 서류

① 신청서(준비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② 휴업 등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대상기간 중 휴업하(하고 있었)거나, 주류 제공 시간을 단축하(하고 있었을)는 것을 알 수 있는 가게 전단지나 매뉴얼, 안내사항이 부착된 시설 사진, 자사 홈페이지 복사본 등

③ 감염확대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주적 협조 내용 확인

- 자주적 협조내용이 기재된 서류, 이러한 협조내용이 기재된 가게 전단지나 사진, 자사 홈페이지 복사본 등
- ※ 자주적 협조란 해당 시설이 이하의 내용과 관련해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가 환기나 좌석 간격의 확보 등 3가지 밀(밀폐·밀집·밀접) 방지
나 종업원 마스크 착용 등 비말감염·접촉감염 방지
다 시차출근, 재택근무 등 이동시 감염 방지

※ 이미 행한 조치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조건입니다.

④ 해당사업소의 시설 실태 및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확정신고서 복사본, 혹은 각종법규에 근거한 영업허가증 복사본 등

⑤ 서약서

- 신청서류에 거짓이 없음을 나타내는 서약
(준비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재하겠습니다)

대상시설·대상사업자

① 홋카이도가 휴업요청을 한 시설에 대해 요청을 받아들이고 휴업한 사업자

- 하나의 시설에 휴업요청에 해당하지 않은 시설이 섞여 있는 케이스로 휴업요청 대상 시설을 휴업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상.

【예】 가 숙박시설 중 휴업요청 대상이며 <집회 용으로 제공하는 부분(연회장)>이 있는 경우
나 목욕탕 중 휴업요청 대상이며 <사우나>가 있는 경우 등

- 휴업요청 대상시설 중 복수의 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시설을 휴업 한 경우 대표자에게 하나의 사업자분을 지급합니다.

【예】 복수의 네일아티스트(개인사업자)가 하나의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 손님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출장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는 휴업요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금대상에서도 제외

【예】 마사지숍(국가자격보유자가 치료를 행하는 곳은 제외)은 휴업요청대상이지는

하지만, 호텔 등으로 출장을 가서 시술하는 출장형서비스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자가 관리하는 시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

② 홋카이도가 요청한 주류 제공시간의 단축(19시까지)을 받아들여 이를 실시한 식사제공시설(음식점)의 사업주

- 본래 주류를 취급하지 않은 음식점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조건입니다.

문의 【휴업요청전용 다이얼】

• 전화번호 : 011 - 206 - 0104 또는 011 - 206 - 0216